定 款 (정관)

서울다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서울다락』 이라 부른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체는 철저한 준비 없는 창업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은퇴 시니어들을 위하여 단체가 운영하는 요식업체에 직접 고용하거나 교육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안정적인 창업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 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소모임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우리 단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요식업 운영 및 요식업 창업 교육
- 2.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 ② 우리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소재) 우리 단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사무소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회원가입)

- ① 우리단체의 회원은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또는 단체,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또는 단체, 법인)으로 한다.
- ② 우리단체의 회원은 정해진 입회절차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우리단체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단체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회의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 ③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④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또는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⑤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우리단체의 명예와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끼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우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 1인을 총회에서 선임하고, 필요할 경우 이사 1인 이상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단 권위로 인한 보궐의 경우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② 대표는 회원 중에 선임하며, 우리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 ④ 우리 단체는 필요한 경우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⑤ 감사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가. 우리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우리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화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우리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에게 의 격을 진술하는 일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이해상충) 임원은 우리 단체와 본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 제10조 (총회) 총회는 우리단체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정관의 변경, 우리 단체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 ① 총회는 년 1회 정기총회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되는 임시총 회로 구분하되 대표가 소집한다.
- ② 대표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정과 변경의 경우 재적 회원 수의 2/3의 동의로 의결한다.
- ④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이사회

- **제12조 (이사회)** 이사회는 우리단체의 일상적 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 ①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⑥ 기타 주요사항
- 제13조 (이사회의 회의)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하되 필요시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14조 (재정)

- ① 우리단체는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 한다
- ② 우리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정부보조금 및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재원으로 운영한다.
- 제15조 (회계연도) 우리단체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 (회계보고) 우리단체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조(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하고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제공 할 수 있다.
- 제18조(이익배분 금지) 우리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해산) 우리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20조(잔여재산) 우리단체가 해산할 경우 우리단체의 잔여재산은 정부, 지방자치단 체 또는 우리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관에 귀속한다.
- 제21조(서면결의) 총회를 제외한 각급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 제22조(운영규정의 제정) 우리단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이후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 제23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발기인회) 발기인회가 행한 행위는 우리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조(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25년 3월 15일

발기인 대표	신 해 균	(인)
발기인	김 재 석	(인)
발기인	김 선 민	(인)
발기인	이다미	(인)

발기인 김 찬 진 (인)